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19일, 김선교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4.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의원)

현행법상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구축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년 등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불편 개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음.

이에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18조제4항, 제11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1.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확산 거점기관을 2026년 완공목표로 구축 중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의견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함¹⁾.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는 ‘green care’로 통용되고 있으며, 농업 기반을 강조하기 위한 ‘care farming’도 폭넓게 사용됨.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social farming, green care farming, farming for health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며 본질적으로는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곤충 기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르기, 농촌환경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치유농업과 일반농업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치유농업의 목적은 치유대상의 신체·인지·심리·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을 이용하여 치유농업시설(농장, 마을, 기관 등)에서 설계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발전과정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는 각각 다음 표와 같음.

【 치유농업 발전과정 】

치유농업 발전과정



1994 초창기

원예치유 도입

- 생활원예
- 프로그램 개발 적용



2013~2014 도입기

치유농업 도입전략 구상

- 치유농업 현황, 특성분석
- 국내 도입 전략 구상
- 대상자 맞춤형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



2015~2016 전략수립기

치유농업 제도구축 방안 마련

- 치유 프로그램 용어사용 기준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작성
- 한국-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 발간



2017~2020

활성화기반 구축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 설계

- 서비스 제공 체계화
- 치유농업프로그램 보급 사업
- 치유농업법 제정 ('20.3.24)



2021~2024 활성기

치유농업법 개정·시행

- 치유농업법 시행(21.3)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21.7)
- 제1차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22.4)
- 품질관리를 위한 법 개정시행(24.6)



2025 인증제도 도입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제출(2025. 4. 16.)

【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 및 효과 】

사 례	치유농업 자원 · 활동	효과 · 효능
대사성 만성질환자 건강 증진 (순창농장, 2019)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농장 활동(산책, 농작업, 건강식 만들기 등) * 주 1회 4시간씩 활동(7주)	인슐린 분비능 증가(47%)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28%) 비만지표 감소(허리둘레 2cm↓)
보건(의료)기관 연계 (홍성 행복농장, 2016~)	치유농업 체험캠프(5일) → 직업재활 프로그램(정신질환자, 1개월) → 인턴십(6개월) →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풀무농고, 로컬푸드 등) 창조지역사업유치(10억 원 2017) * 연간 5천만 원 매출
도시 인근 치유농업 경영체 (경북 트랙, 2011~)	취약계층, 장애인, 환자 대상 원예치유 체험 프로그램(2011~) → 치유농장 개소(보건소 연계)	치매환자(보호자), 지역아동센터, 지적장애인단체, 노인복지관, 전문용양병원 연계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 소방관 심신치유 (홍천 열목어마을, 2018)	소방관 대상 농촌치유자원 체험(1박2일- 치유타레킹, 명상, 약선 치유음식 등)	자율신경활성도(93→102) 심장안정도(98→116) 스트레스지수(100→89) * 도입 후 3억 원 추가 소득
청소년 폭력성 완화 (김천소년교도소, 2014)	교도소 내 상자텃밭(농원) 가꾸기 프로그램 * 주1회 2시간씩 활동(24주)	불안감 감소(45%, 설문지) 스트레스 감소(52% 코티졸함량) 우울감 감소(56%)
노인 건강 증진 효과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실버 주말농장, 2014)	텃밭 가꾸기 및 공동체 밥상차리기 * 주1회 2시간씩 활동(27주)	우울감 감소(60%) 총콜레스테롤 감소(5%) 체지방률 감소(2%,)
학교폭력 문제 완화 (서울 수락중 등 4개소, 2015)	교내 텃밭 조성 활동(Wee스쿨) * 주1회 2시간씩 활동(20주)	가해학생 폭력성 감소(4.3%) 피해학생 우울감 감소(5.4%) 스트레스 대처 향상(8.5%)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5. 4. 16.)

한편,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 전문기관 구축을 위해 '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300억원의 규모로 김해에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치유농업확산센터 설립 사업개요 】

- ◆ 목적 :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 전문기관 신설
- ◆ 주체 : 농촌진흥청(설립, 소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 ◆ 기간/총사업비 : '21~'26(6년) / 300억 원(국비 244, 지방비 56)
- ◆ 역할 : 연구성과 실증·확산, 치유농업사 역량강화 교육,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운영,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및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제 실행, 정책수립·창업 지원 등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5. 4. 16.)

【 치유농업확산센터 설립 추진 경과 】

- ◆ ('20.12)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기본조사·실시설계비 예산 반영(9.64억원)
- ◆ ('21.2.8) 확산센터 설립·운영 관련 기재부 협의
 - * (비용부담) 총사업비 300억원 중 국비 240억원, 지방비 60억원(8:2)
- ◆ ('24.11.29) 치유농업확산센터 부지선정(김해시) 및 매입 완료, 공사 착공
⇒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에 따라 업무범위와 위탁운영 근거 마련 필요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5. 4. 16.)

치유농업확산센터 설립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4년 11월말 치유농업확산센터 부지 선정 및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치유농업확산센터 설립 공사가 착공되어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에 있음.

이에 개정안은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치유농업확산센터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확산을 도모하고,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농촌진흥청이 광역단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을 지원하는 거점기관 육성²⁾을 목적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역할과 유사한 “치유농업센터”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바,

농촌진흥청은 향후 각 사업 간 중복을 지양하고, 사업 간 연계성을 제고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치유농업확산센터’의 명칭을 ‘중앙치유농업센터’ 등으로 변경하여 현재 8개소에서 운영중인 ‘치유농업센터’와 혼동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치유농업센터) '27년도 17개소 설치 목표

※ 조성현황('25년) : 13개소

- 조성완료 : 8개소(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서울, 전북, 전남)

- 추진중 : 5개소(강원, 경남, 부산, 인천, 광주)

【 치유농업확산센터와 치유농업센터 비교 】

구분	치유농업확산센터	치유농업센터
설치·운영 근거	개정안 제8조의2	치유농업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설치목적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 등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한 중앙단위 지원기관 구축	광역단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을 지원하는 거점기관 육성
조성현황	(착공) '24.11월/ (준공) '26.8월	('21 ~ '22) 2개소 → ('23) 8 → ('24) 12 → ('25) 13 → ('27) 17
사업기간	2021 ~ 2026	2021 ~ 2027
사업금액	300억원(국비 244, 지방비 56)	개소당 10억원(국·지 각 50%) * 5억씩 2년간 지원
사업대상 (사업위치)	농촌진흥청 직접사업 (경남 김해시)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 법 제7조에 따른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시군내 농업인(치유농업사 등) 대상 식물, 동물·곤충자원 활용 교육·실습 운영
사업 대상	전국단위 '치유농업사 등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 기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및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 치유농업시설을 구축 할려는 개인 등'	(수혜대상) 특광역시 내 '시군 농업인(치유농업사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개인 또는 기관 등'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5. 4. 16.)

2.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 규정 (안 제11조제4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을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 ⑦ (생략)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6항----- ----- 5. 제11조제6항----- -----

현행	개정안
한 경우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6항-----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제5항-----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희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11조는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방법, “치유농업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치유농업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치유농업사” 결격사유³⁾ 등을 규정하고 있음.

치유농업사는 '21년 자격시험 시행 이래 2급 치유농업사 647명을 배출하여 운영중에 있음⁴⁾.

“치유농업사”의 결격 사유로 현행법 제11조제2항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21년) 93/누계93 → ('22년) 160/253 → ('23년) 138/391 → ('24년) 256/647

을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의 조회 기준일”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결격사유의 조회 기준일을 실무상 2차 (최종)시험 합격발표일을 기준으로 운영(∼’23년도)하였음.

그런데, 결격사유의 조회 기준일을 어느 시점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⁵⁾.

즉,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사 자격 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전날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23년도까지는 ① 2차시험까지 최종합격을 한 ② “자격증 발급일” 기준 결격사유가 해소될 예정인 자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자격 취득이 불가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및 자격증 취득 여부 비교 】

구 분	10월	11월			12월
’23년도	10.21 (2차시험)	11.9 (결격사유 조회) 11.10 (합격자 발표)	11.10~16 (이의제기)	11.24 (이의제기 답변)	12.15 (자격증 발급일)
개정안 반영시	10.21 (2차시험)	11.10 (합격자 발표)	11.10~16 (이의제기)	11.24 (이의제기 답변)	12.15 (결격사유 조회 및 자격증 발급일)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5. 4. 16.)

5) 결격사유의 조회 기준일이 자격증 발급일일 경우 자격증 발급일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자격 발급이 가능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이 법령상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규정없이 실무 차원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응시를 제한하고 있는바,

국가자격 부여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당사자 불이익 논란이 없는 방향으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법률·지침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자격시험 응시 불편 개선 권고”를 의결('24.5.27)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로 응시자 권리보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68개 국가자격시험은 법령상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규정없이 실무 차원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응시를 제한하고 있음
-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결격사유 기준일은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 (개선방안) 국가자격 부여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당사자 불이익 논란이 없는 방향으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법률·지침 등에 마련
- ※ (예시) 법률에 응시제한 근거 없는 32개 자격은 결격사유 기준일을 '자격 발급일'로 개선 및 자격시험 발급 규정·지침에 반영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5. 4. 16.)

이에 개정안은 안 제11조제4항과 같이 결격사유 조항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 등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11조제4항에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이를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산림보호법」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⑥ 나무의사 등의 <u>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u>
「응급의료법」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u>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u>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u>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u>

3. 치유농업 확산센터 운영 업무 위탁 시 필요한 비용 보조 근거 마련(안 제18조제4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촌진흥청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개정안은 같은 조 제2항6)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별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 재정 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OO는 OO를 위하여 OO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OO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와 같이 보조금 지급주체 및 대상자, 대상사업 및 용도(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⁷⁾.

그런데, 안 제18조제4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사업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상기 비용 지원 관련 대상자, 대상 사업, 대상 용도(목적)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촌진흥

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7) 법제기준과 실제(p 470.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5.)

법」을 살펴보면, 제33조⁸⁾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진흥법」 제3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운영”을 추가로 규정하고, 동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사업 지원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 입법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관리·유통·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지원 3.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식진흥법」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2.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지시·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 ‘치유농업 확산센터’의 명칭을 ‘중앙치유농업센터’로 수정하고,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 위탁 시 비용지원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광역단위 거점기관인 ‘치유농업센터’와의 위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명칭을 ‘중앙치유농업센터’로 변경하고,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지원 조문을 구체화하며,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에 따른 제재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치유농업확산센터’의 명칭을 ‘중앙치유농업센터’로 수정하고,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 위탁 시 비용지원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에 따른 제재효과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1조제4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의 제목 중 “치유농업확산센터의”를 “중앙치유농업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유농업확산센터를”을 “중앙치유농업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제4항 중 “자격시험 자격증”을 “자격증”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를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로 한다.

안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u>제8조의2(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설치·운영한다.</u> <u>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u> <u>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u> <u>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u> <u>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u>	제8조의2(<u>중앙치유농업센터</u>의 설치·운영) ① ----- ----- ----- ----- -----<u>중앙치유농업센터</u>를----- -----. 1. ~ 4. (개정안과 같음)

	<u>화 추진을 위해</u> <u>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업무</u> ② 제1항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치유 농업확산센터의 설 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 치유농업센터의 운 영을 「농촌진흥 법」 제33조에 따 른 한국농업기술진 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 촌진흥청장은 예산 의 범위에서 그 운 영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중앙 치유농업센터의 설 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④ ~ ⑦ (생 략)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u>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u>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u>	④ -----<u>자격증</u>----- ----- ----- ----- -----<u>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u> ⑤ ~ ⑧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11조제5항을”을 각각 “제11조제6항을”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제11조제5항을”을 “제11조제6항을”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4항을”을 “제11조제5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운영한다.</u> <u>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u> <u>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u> <u>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u> <u>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 <u>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u>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 ⑦ (생략)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u>	<u>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u>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1조제6항을</u>----- -----
--	--

우 5. <u>제11조제5항을</u> 위반하여 치 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 선한 경우 ② (생 략)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u>제11조제5항을</u> 위반하여 치 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 위를 한 자 3. (생 략)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u>제11조제4항을</u> 위반하여 치 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 ③ (생 략)	- 5. <u>제11조제6항을</u>-----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1조제6항을</u>----- ----- ----- 3.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1조제5항을</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